

드림씨어터 대관규약

제정: 2018년 06월 01일

개정: 2019년 08월 01일

I.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약은 드림씨어터(이하 "공연장"이라 한다)의 대관 및 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과 준수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대관"이라 함은 공연, 연습, 녹음, 녹화 및 이와 관련한 부수행위 등의 시행을 목적으로 공연장의 시설 및 부대설비를 소정의 절차를 통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대관자"라 함은 본 규약을 인정하고 "공연장"과 대관계약을 체결한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대관의 범위)

1. 본 규약의 적용을 받는 대관시설 및 부대설비는 다음과 같으며, 그 세부내용은 "공연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단, 부대설비는 "공연장"을 대관 사용할 경우에 한하여 대여한다.
 - ① 대관시설 : 공연장(1,727석) 및 그 밖의 공연 관련 시설
 - ② 부대설비 : 조명, 음향, 자막기 등 관련 시설의 공연장비
2. "공연장"은 대관시설 및 부대설비의 관리 유지, 입장 통제, 안전 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제4조 (대관의 종류)

1. 대관은 신청시기에 따라 조기대관과 정기대관,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
 - ① 조기대관은 우수 공연 유치 등 원활한 공연장 운영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기대관 시행 이전에 차기 연도 이후의 공연일정에 대하여 시행하는 대관을 말한다.
 - ② 정기대관은 매년 차기 연도 공연일정에 대하여 시행하는 대관으로 "공연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 승인, 계약체결 등의 절차를 통해 시행한다.

- ③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확정 이후 대관취소 등의 사유로 잔여 일정이 발생할 경우 비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대관을 말한다.

2. 대관은 사용목적에 따라 공연대관과 준비대관, 철수대관, 기타대관으로 구분한다.

- ① 공연대관은 입장권 발권을 수반하는 공연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연장을 대관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준비대관은 공연대관 이전에 무대 세트 및 장비 설치, 리허설 등 공연의 준비를 위하여 대관하는 것을 말한다.
- ③ 철수대관은 최종회차 공연을 종료한 이후 무대 세트 및 장비 등의 철수를 위하여 대관하는 것을 말한다.
- ④ 기타대관은 공연 목적 이외에 방송, 영화, 광고, 행사 등을 위하여 공연장, 객석, 로비, 부대시설 등을 대관하는 것을 말한다.

II. 대관료

제5조 (대관료 산정)

대관료는 “공연장”이 정하는 대관료 규정에 의거하여 부과한다.

제6조 (대관 계약금 및 잔금 납부)

1. 사용승인을 받은 “대관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본대관료의 30%를 납부해야 하며, 나머지 잔금은 입장권 판매 개시 이전 또는 대관개시일 90일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단, 대관승인일로부터 대관개시일까지의 일수가 90일보다 적을 경우에는 별도로 청구한 납부기한까지로 한다.
2. 공연준비대관 시작일 이전에 발생하는 추가대관료는 발생 즉시 납부해야 하며, 이후 발생한 대관료는 공연 종료 후 7일 이내에 납부 정산한다.
3. 주 8회 이상 대관공연의 경우, 매주 월요일은 공연장 휴관일로 정하여 공연을 하지 않고 대관료를 산정하지 않는다.
4. “대관자”의 요청으로 대관기간 내 휴관할 경우 공연하지 않은 날도 공연 1회 기준 대관료를 납입해야 한다.
5. “대관자”가 대관료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공연장”은 대관승인 및 대관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대관자”가 기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6. “공연장”은 대관료 확보를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관자”에게 계약이행보증 보험증권 제출을 요구하거나 입장권 판매금액을 최우선 순위로 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7. "공연장"과의 공동기획공연 또는 24회 이상의 장기대관공연의 경우, 대관료 산정 및 납부방식은 별도 협의에 따른다.

제7조 (대관료 반환)

"대관자"가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연장"의 승인 하에 대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불가항력에 의하여 "공연장"의 대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한 대관료에 대하여 100% 반환)
2. "공연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한 대관료에 대하여 100% 반환)
3. 부대시설 신청 후 사용 7일 전 취소한 경우 (100% 반환)
4. "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연준비대관일로부터 180일 전에 대관취소를 신청하여 "공연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 (납부액의 50% 반환)

Ⅲ. 대관신청 및 승인

제8조 (대관신청)

1. 대관신청인은 대관 신청 시 대관신청서, 공연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2. 대관계약 후 추가되는 일정 및 부대시설사용신청 등은 소정의 양식으로 같음한다.
3. 다음과 같은 경우 대관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 ① 법령 또는 사회적 통념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공연하려는 단체 또는 개인
 - ② "공연장"의 시설이나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공연장"의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하려는 단체 또는 개인
 - ③ 계약 체결 후 대관취소를 하거나 또는 작품변경을 2회 이상 실시한 단체 또는 개인
 - ④ 특정한 종교나 정치의 홍보를 목적으로 공연 또는 행사를 실시하려는 단체 또는 개인
 - ⑤ 기타 공연의 내용 및 수준이 "공연장"에서 수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단체 또는 개인
 - ⑥ 본 규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신청

제9조 (대관승인)

1. "공연장"은 대관신청 접수 후 신청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대관신청인에게 서면(대관승인서, 대관 불가통지서) 또는 유선으로 통보한다.
2. "공연장"은 대관승인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과 대관기간 및 내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3. 대관승인을 받은 자는 대관승인서에 명시된 기일 내에 "공연장"와 대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4. "대관자"는 "공연장"이 요구하는 준비 및 철수 대관에 대한 최소한의 일정을 확보해야 하며, 이에 대해 "대관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5. 공연에 필요한 부대설비 사용을 위해 대관 계약 후 '부대시설 사용신청서'를 스태프회의 직후 "공연장"에 제출해야 한다.

IV. 대관승인취소, 내용변경금지, 공연취소

제10조 (대관승인취소 및 신청자격제한)

1.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공연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① 대관승인 후 대관신청서의 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 ② "공연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③ "공연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④ "공연장"의 승인 없이 입장권 또는 교환권을 발행한 경우
 - ⑤ 공연장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한 경우
 - ⑥ 본 규약을 위반한 경우
2. 공연대관 취소의 경우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연에 임박하여 대관취소를 할 경우에는 제 8조에 의거하여 이후의 대관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권 양도 및 전대 금지)

"대관자"는 "공연장"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제12조 (내용변경금지 및 대관취소)

1. "대관자"는 대관신청 시 명시한 내용(공연명, 공연일정, 출연자, 공연내용, 주최자 등)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관시작일 3개월 전까지 반드시 "공연장"

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변경 내용이 대관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공연장"은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2. 공연준비기간이 시작된 후 "대관자"의 사정으로 공연 대관기간 중 공연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관자"는 공연대관료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3. "공연장"은 "대관자"가 공연장 또는 부대시설 사용에 있어 사전에 승인되지 않은 부분을 임의로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하여 추가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대관료 또는 부대시설 사용료를 부과한다.
4. "대관자"의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5. 대관이 취소된 경우 "대관자"가 납부한 대관료는 제7조에 의해 처리된다.

제13조 (공연 취소 및 중지)

1. "대관자"의 사정으로 공연이 취소되거나 중지될 경우, "대관자"는 입장권 교환 및 환불, 기타 입장권 구매자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 천재지변으로 공연이 취소되거나 중지된 경우, "공연장"은 취소된 공연에 대하여 납부된 대관료를 반환하고 "대관자"는 입장권의 교환과 환불, 기타 입장권 구매자에게 책임을 지는 이외에 상호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다.
3. 정부 또는 관계기관에 의한 단전, 단수, 교통통제, 또는 요청에 의하여 공연을 진행할 수 없거나 공연이 취소, 중지되는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 "공연장"은 취소 또는 중지된 공연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으며 면책된다.
4.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기계 결함이나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개입되어 공연이 취소되거나 중지된 경우, "공연장"의 "대관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취소된 공연의 대관료 반환과 입장권의 교환 및 환불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된다. 다만 "공연장"에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대관자"가 진다.

V. 입장권 발행, 판매 및 매표, 수표관리

제14조 (입장권 발권)

1. "공연장" 좌석은 총 1,727석(고정 1,688석, 탈부착 39석[휠체어석 18석으로 전환])으로 공연특성에 따라 사용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2. "대관자"는 입장권을 임의로 추가 또는 초과 발행할 수 없고,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대관자"에게 있으며 "공연장"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대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공연장"은 사전 승인되지 않은 입장권에 대해 공연장 입장을 제한, 거부할 수 있다.

3. "공연장"은 외부 판매대행사를 통해 "공연장"의 매표 업무(전산등록, 판매, 발권, 정산)를 위탁 운영하며, "공연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외부 판매대행사(이하 "위탁판매대행사"라 한다) 및 "위탁판매대행사"와 실시간 좌석을 공유하여 판매하는 타 연동판매대행사, 기타 "공연장"이 인정하는 판매대행사의 전산입장권을 발권하는 것으로 "공연장"의 입장권 판매 및 검인을 대신한다.
4. "공연장"은 "공연장" 제휴 파트너십, 공연 모니터링 및 원활한 공연장 운영 등을 위하여 일부 좌석을 하우스티켓으로 유보하여 사용한다. 하우스티켓은 아래 지정된 좌석을 기준으로 하되, 공연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연장"과 "대관자"의 협의를 통해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

회당 30 매 [객석1층 8열 13번~16번, 13열 13번~20번, 13열 29번~36번 (20매) /

객석2층 1열 13번~20번, 2열 13번~14번 (10매)

[개정 2019.08.01]

제15조 (입장권 판매 및 매표, 수표관리)

1. "대관자"는 "공연장"의 "위탁판매대행사"에게 입장권 판매대행을 의뢰해야 한다. "대관자"와 "위탁판매대행사"에게 입장권 판매대행 의뢰를 요청하는 자가 다를 경우 "대관자"는 "공연장"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위탁판매대행사"에 공연 등록 및 판매대행 의뢰 시 "대관자"는 타 연동판매대행사를 선택할 수 있다.
3. "공연장"의 "위탁판매대행사"와 타 연동판매대행사, 기타 판매대행사에 입장권을 할당 판매하고자 할 경우 "공연장"과 사전 협의해야 하며, "공연장"의 고객 편의 및 원활한 티켓발권 서비스를 위해 "공연장" 판매좌석수 대비 좌석등급별로 30% 이상의 좌석을 "공연장"에 할당 판매하여야 한다.
4. 본조 3항과 별도로, "공연장"과 ㈜하나투어와의 제휴협약에 준하여 "공연장" 판매좌석 총 수량의 10%(1층 중앙블록 1~7열 중 최소 50석 포함)를 '하나티켓'에 할당 판매함에 "대관자"는 최대한 협조한다.
5. "대관자"는 "공연장" 회원에게 선예매 및 할인혜택 등을 제공하는 회원제도를 인정해야 한다. 선예매 및 할인율의 세부내용은 "대관자"와 "공연장"이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며, "공연장"은 홈페이지 및 자체 홍보 수단을 통해 할인내용을 고지한다.
6. "대관자"는 "공연장"과 제휴된 'BC카드' 회원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할인율은 "대관자"와 "공연장", 그리고 'BC카드'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며, "공연장"과 'BC카드'는 홈페이지 및 자체 홍보 수단을 통해 할인내용을 고지한다.
7. "대관자"는 "공연장"에 대관료 잔금을 납부한 이후에 티켓판매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초대교환권의 발행 또한 대관료 잔금 납부 이후 가능하다.
8. 대관료 및 부대시설비용에 대한 미수금을 발생할 경우 "공연장"은 "위탁판매대행사"에게 지급 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
9. "대관자"는 "공연장"이 입장권 판매 추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매표 개시일부터 입장권 판매대행사별 판매현황을 일 단위 또는 주간 단위의 문서로 공유하여야 한다.

10. "대관자"는 "공연장"의 "위탁판매대행사"와 타 연동판매대행사에서 판매된 정보(예매정보 및 정산보고서)를 "공연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11. "대관자"는 미취학 아동의 입장을 제한하는 "공연장"의 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연의 특성상 입장연령을 조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연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입장권을 제공 또는 판매할 경우, "대관자"는 "대관자"의 부담으로 미취학 아동의 입장권에 대해 환불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민원 또는 "공연장"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12. 입장권 매표는 "대관자" 책임으로 하며, 수표는 "공연장"에서 전담한다.

VI. 공연장사용 및 관리의무

제16조 (시설 및 설비 변경금지)

1. "대관자"는 "공연장"의 시설 및 설비의 변경을 가하거나 별도의 설비를 반입, 설치할 경우 반드시 "공연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대관자"는 사용완료 즉시 "대관자"의 비용 부담으로 변경된 시설 등을 원상 복구시키고 반입 설치한 설비를 철거해야 한다. "대관자"가 원상복구 및 철거를 지연할 경우 "공연장"에서 직접 철거 및 폐기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대관자"가 부담한다. 단, "공연장"의 철거 및 폐기 조치로 발생한 설치물의 손상에 대해서 "대관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며 "공연장"은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3. "대관자"는 "공연장"의 시설 및 설비 철거 요청에 즉시 응해야 하며, "공연장"의 철거 요청 통지로부터 3일 이내 철거 업무를 완료해야 한다.
4. 무대 설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쓰레기는 "대관자"의 책임 하에 공연 종료 시 반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시설사용 및 관리의무, 손해배상)

1. "대관자"는 "공연장" 객석 및 무대, 로비에 공연과 관련 없는 어떠한 시설물도 "공연장"의 사전 승인 없이 설치할 수 없다.
2. 공연과 관계되는 판촉, 사인회, 리셉션은 "공연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 시 장소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3.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공연장"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특히 무대장치나 대도구의 경우 필히 방염을 하여야 하며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공연장"의 요청 시 "대관자"는 무대장치나 대도구 등 외부에서 반입된 장비에 대하여 방염 및 전기안전검사 등 각종 안전검사에 대한 승인을 얻었다는 필증 등을 "공연장"에 제출해야 무대장치나 대도구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공연장"은 공연이나 행사 시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5. "대관자"는 "공연장"에서 정하는 공연장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6. "대관자"가 전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공연장"의 시설 및 설비, 기타 부속시설(분장실 집기, 비품, 열쇠 등)에 대해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원상회복하거나 교체에 필요한 비용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7. 회관의 "공연장" 내 반입은 금지한다. 공연종료 후 시설철거비용 및 환경정리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8. 대관기간 중(공연준비 및 철수시간 포함) 공연 또는 공연준비, 철수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대관자"가 이를 배상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공연장"이 입은 손해 및 "공연장"이 제3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 손실보상, 기타 책임에 대하여 "대관자"가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장"에게 고의, 중과실이 있거나 "대관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대관자"가 진다.
9. "대관자"는 "공연장"에 입점한 운영시설에 대한 영업권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10. 상기 각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공연장"은 시설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대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VII. 공연진행 및 스태프회의

제18조 (공연진행협조)

1. 스태프회의

- ① "대관자"는 무대작업일정, 무대기술 전반에 관한 사항, 부대시설 사용내용을 결정하기 위해 공연준비대관 시작일 최소 3주 전까지 "공연장"의 주관 하에 "공연장"의 무대기술 스태프와 스태프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단, "공연장" 건축물을 이용한 장치의 설치 및 고하중 특수장치 설치와 관련해서는 제작단계에서 "공연장"의 무대기술 스태프들과 안전 및 기술적인 사항을 사전 협의해야 한다.) 스태프회의 이후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대관자"는 공연준비대관 시작일 3일 전까지 "공연장" 무대기술팀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 ② "대관자"는 스태프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일정 등의 주요 변경사항은 "공연장" 담당자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2. 무대진행 및 백스테이지 관리

- ① "대관자"는 무대작업 및 공연진행 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각종 장치 및 장비설치는 기술 검토 후 "공연장" 관리감독 하에 작업해야 한다.
- ② 공연과 관련된 무대진행상의 책임은 "대관자"가 선정한 무대감독에게 있으며, "공연장"의 기본시

설 및 장비의 안전과 관리 등의 일반적인 무대진행에 관한 책임은 "공연장" 무대감독에게 있다.

- ③ 백스테이지 출입은 "공연장"이 발행하는 출입증을 소지한 자만 가능하며, "대관자"는 백스테이지 출입자 명단을 공연준비대관 시작일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출입증을 입장권으로 대신할 수 없다.

3. 공연진행

- ① 공연당일의 진행은 공연시작 1시간30분전부터 공연종료 마감까지를 말하며, 1회 공연은 180분(중간휴식시간 포함)을 초과하지 않는다.
- ② 8회 이상 공연의 경우, 월요일 휴무를 기본으로 한다.
- ③ 원활한 공연진행을 위해 "대관자"는 "공연장"의 무대감독과 하우스매니저의 협조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하며, 공연진행 중 문제발생 시 "공연장"의 무대감독 또는 하우스매니저는 공연시작을 지연하거나 공연을 중지할 수 있다.
- ④ 공연진행과 관련한 하우스운영(객석관리, 공연진행, 안전관리 등)은 "공연장"의 하우스매니저가 총괄한다.
- ⑤ "대관자"는 객석 및 로비에서의 모든 활동에 관하여 하우스매니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⑥ "공연장"은 원활한 공연장 운영을 위하여 공연 당일 미취학 아동 및 기타 부득이한 악성 민원이 발생할 경우 입장권을 환불 조치할 수 있다.
- ⑦ "대관자"는 "공연장"의 자료보관 및 관계기관의 공연자료요청, 원활한 공연진행을 위해 공연 포스터 10부, 공연 프로그램북(발매 시) 30부, 공연 OST(발매 시) 10개, 공연 DVD(발매 시) 10개를 공연시작 전까지 "공연장"에게 무상 제공하여야 한다.
- ⑧ "공연장"은 별도의 협의가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하우스를 운영한다. "대관자"는 이에 최대한 협조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입장권에 명기해야 한다.

[드림씨어터 공연 관람 시 유의사항]

- . 입장권은 전면에 표시된 해당 일시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며, 도난이나 분실 시 재발행되지 않습니다.
- . 예매된 티켓의 취소 및 변경은 공연일 하루 전 마감시간(평일 오후 5시·토요일 낮 12시 이전, 일요일·공휴일 제외)까지 가능하며, 공연 당일에는 변경이나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 . 현장 구매 및 배송받은 티켓은 취소 및 변경 시간이 별도 적용됩니다.
- . 예매한 티켓의 취소 시 소비자보호법에 의거하여 수수료 공제 후 환불됩니다.
- . 초대권의 경우 별도의 환불, 취소, 변경이 불가합니다.
- . 승용차 이용 시 주차장이 혼잡하여 공연장 정시 입장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이용으로 인한 공연장 입장 지연 시에도 당일 티켓의 교환 및 환불은 불가합니다.
- . 공연장 입장연령은 공연별로 상이하며, 입장연령 미만 관객은 입장이 불가합니다.
- . 공연 시작 후에는 입장이 제한되거나 상황에 따라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공연장 내에서는 꽃다발 증정, 사진 및 비디오 촬영, 음식물 반입 등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 공연장 내에서는 반드시 휴대폰의 전원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Ⅷ. 홍보물 및 방송 협의

제19조 (광고홍보물 협의)

1. "대관자"는 "공연장" 내·외부에 공연과 관련된 홍보·판촉물을 부착 및 설치하고자 할 경우 "공연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연장"이 지정하는 장소 외에는 부착 및 설치할 수 없다. 사용료가 발생하는 홍보물의 경우 정해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부착기간은 "공연장"과 별도 협의해야 한다. 공연 협찬사 또는 후원사 등의 상업적인 홍보·판촉물일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별도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2. "대관자"는 "공연장" 홈페이지 내 대관공연 홍보를 위하여 공연시작일 최소 3개월 이내에 공연 관련 세부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3. "대관자"는 대관계약 체결 이전에 공연 광고나 홍보를 게시할 수 없다.
4. "대관자"는 공연 관련 홍보 보도자료를 "공연장"에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5. "대관자"는 공연에 필요한 각종 광고·홍보물 제작 시 "공연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공연장"이 정하는 로고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20조 (방송 및 녹화 등)

1. "공연장"에서 행해지는 공연 준비 및 공연을 녹화 또는 방송할 때는 "공연장"의 사전 승인을 얻고 정해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중계위치, 시설사향, 촬영범위 등에 관하여는 "공연장"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2. 녹화 또는 방송으로 인해 공연 관람에 방해가 되는 좌석이 발생할 경우 해당 좌석은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이미 판매되었을 경우에는 공연시작 전에 해당 좌석의 교환 좌석을 준비하여 하우스매니저에게 위탁해야 한다.

Ⅸ. 부칙

제21조 (규약의 효력 및 적용시기)

1. 본 규약은 계약 당사자간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2. 본 규약은 2019년도 4월 이후의 공연을 위한 대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22조 (규약변경승인)

1. 본 규약을 변경할 경우 "공연장"은 "대관자"에게 변경규약의 시행 1개월 이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한

다.

2. "대관자"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통지서 도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연장"에 서면 접수해야 한다. "대관자"가 위 기한 내에 별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2조 (규약위반 시의 책임)

1. "대관자"는 "공연장"에서 정한 안전수칙 등 제반 규약을 위반하거나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대관자"는 "공연장"이 대관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어떠한 경우라도 제3자로부터 청구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공연장"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법률 비용을 포함한 제반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해야 한다.
3. "공연장"은 "공연장"의 귀책사유로 "대관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대관자"가 납부한 해당 대관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한다.

제23조 (기타)

본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약의 해석에 관해서는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

제24조 (관할법원)

본 규약에 따른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연장" 소재지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